

## 넥서스 브리프

NB-2026-019 · 소비자보호·분쟁 · 발행 2026년 8월 16일 · 읽기 6분

## 교육은 연 2 회 의무인데 이체 차단은 왜 협약인가

불법 도박 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체를 차단할 조문이 없다

## 연구소의 판단

연구소는 이번 협약의 범위를 참여 기관의 선택이 아니라 근거 규정의 부재에서 온 결과로 본다. 도박예방교육은 법 개정으로 학교장의 연 2 회 의무가 됐지만, 불법 도박 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체를 중단시키는 조문은 없다. 그래서 계좌 차단은 협약에 서명한 회사의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.

## 01 · 확정된 사실

교육부는 2026 년 7 월 22 일 청소년 도박문제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| 항목        | 값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협약 체결일    | 2026 년 7 월 22 일    | 교육부·금융감독원·푸른나무재단·카카오뱅크        |
| 제로라운드 확대  | 전국 170 개 중고교       | 예술 체험형(연극) 도박예방교육             |
| 도박 위험성 인식 | 25.1% 향상           | 참여 학생 기준                      |
| 도박 대처 역량  | 42.8% 향상           | 참여 학생 기준                      |
| 이체 차단 담당  | 당사자 4 곳 중 금융회사 1 곳 | 발표 자료의 역할 배분                  |
| 도박예방교육 의무 | 연 2 회 이상           |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, 2026.5.12 시행 |

협약 당사자는 교육부, 금융감독원, 푸른나무재단, 카카오뱅크 네 곳이다. 발표 자료에 적힌 역할은 기관마다 다르다. 금융감독원은 청소년 금융피해 예방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한다. 푸른나무재단은 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개발한다. 카카오뱅크는 불법 도박 의심계좌 이체 차단 등 기술적 예방 조치를 지원한다.

예술 체험형 도박예방교육 '제로라운드'는 연극 형식이다.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 170 개 중고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. 참여 학생의 도박 위험성 인식은 25.1%, 대처 역량은 42.8% 향상된 것으로 적었다.

앞선 발표도 있다. 교육부는 2026 년 5 월 7 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알렸다. 5 월 12 일부터 학교장은 연 2 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시행할 의무를 진다. 금융감독원은 2024 년 3 월 19 일 은행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이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·마약거래에 악용된다고 밝혔다. 대책으로는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,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,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를 제시했다.

## 02 · 왜 이런 구조인가

불법 도박은 돈이 오가야 성립한다. 이용자가 운영자에게 돈을 보내는 단계에서 계좌가 쓰인다. 이번 협약에서 그 단계를 막은 것은 금융회사 한 곳이다. 다른 은행과 저축은행,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에게는 같은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. 미성년자가 다른 회사의 계좌나 간편송금을 쓰면 차단이 작동하지 않는다.

이체를 중단시키는 조문이 따로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.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4 조 제 1 항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하면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한다. 다만 같은 법 제 2 조 제 2 호는 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으로 타인을 속이거나 공갈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한정한다. 도박 자금은 이용자가 스스로 보낸 돈이라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.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와 계좌정보의 이용을 규율할 뿐, 자금의 사용처를 이유로 이체를 중단하도록 정하지 않는다. 국민체육진흥법 제 26 조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제 47 조와 제 48 조가 처벌한다. 그러나 그 법에도 금융회사에 이체 차단 의무를 지우는 조문은 없다.

미성년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계좌를 여는 단계에서 작동한다. 제 5 조 제 1 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, 제 2 항은 동의 없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. 그런데 제 6 조는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. 용돈으로 넣어 둔 잔액을 이체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해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. 제 17 조 제 1 항은 나이를 속여 성년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. 제 141 조는 취소된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보되,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한다. 다만 청구할 상대가 불법 도박 운영자면 돌려받을 곳이 없다.

같은 방식이 반복돼 왔다. 금융감독원은 2024 년 3 월 실태점검과 탐지 고도화, 내부통제 강화를 대책으로 냈다. 2024 년 8 월에는 금융회사와 3 년간 약 100 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시작했다. 모두 참여한 기관에서만 적용된다. 반면 도박예방교육은 법에 주체와 횟수가 적혀 있다. 연구소는 한쪽을 법정 의무로, 다른 쪽을 협약으로 다루면 실행 범위가 갈린다고 본다.

---

### 03 ·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

물리는 사람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계좌를 쓰는 미성년자다.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아도 어느 회사의 계좌를 쓰느냐에 따라 이체 차단 여부가 갈린다. 협약 당사자 네 곳 가운데 계좌 이체를 다루는 금융회사는 한 곳이다. 계좌를 고른 것은 대개 본인이 아니라 계좌를 만들어 준 보호자다.

자기 계좌를 빌려준 청소년은 처지가 더 나쁘다.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3 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와 양수, 대가를 받은 대여와 보관,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를 금지한다. 같은 법 제 6 조의 3 은 계좌정보를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. 제 49 조 제 4 항은 이를 어긴 사람을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. 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 제 48 조 제 3 호에 따라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.

이체 화면에는 상대가 불법 도박 운영자라는 표시가 없다. 받는 사람란에는 개인 이름이나 일반 상호가 찍힌다. 차단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거래가 합법이라는 뜻이 아니다. 계좌를 빌려준 쪽도 마찬가지다. 처벌 조문을 확인하는 시점은 대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다.

---

### 04 · 무엇이 안 막히는가

- 이체 차단은 협약에 서명한 금융회사의 계좌에서만 작동한다. 다른 은행과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에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고, 협약에도 그 내용은 없다.
- 불법 도박 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체를 중단시키는 근거 조문이 없다.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는 속이거나 공갈해 취득한 자금을 전제로 하므로, 이용자가 스스로 보낸 도박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법정대리인 동의는 계좌를 여는 단계에서 요구된다. 개설한 뒤 개별 이체의 금액과 횟수를 미리 정해 두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. 민법 제 6 조에 따라 허락된 재산의 처분은 취소 대상에서도 빠진다.

- 의심계좌를 가르는 기준과 잘못 차단했을 때의 이의 절차가 발표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. 정상 거래가 멈춘 이용자가 그 사유를 어디에서 확인하고 어떤 서류로 이의를 내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.

## 05 · 지금 할 일

### 국민

-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의 1 회·1 일 이체한도를 거래 금융회사 앱이나 창구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금액으로 낮춘다. 오픈뱅킹과 간편송금 연결 여부도 같은 화면에서 확인한다.
- 계좌 개설 때 낸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이체한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. 없으면 한도 변경을 신청해 서면으로 남긴다.
- 계좌와 카드, 인증서를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3 항 위반이다. 제 49 조 제 4 항의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알린다. 도박문제 상담은 1336, 불법도박 신고는 1855-0112 다.

### 금융회사

- 협약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기본 이체한도와 심야 이체 처리 기준을 정해 공시한다. 의심계좌를 가르는 기준과 이의 접수 절차를 함께 밝힌다.

### 당국

- 불법 도박 자금 이체를 중단시키는 요건과 절차, 잘못 차단했을 때의 책임 배분을 법령 조문으로 정한다. 협약으로 남기면 어느 금융회사를 쓰느냐에 따라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진다.

### 갈림길

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· 이체 차단이 법령상 의무로 정해지는지,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 조치로 남는지. 2026 년 7 월 22 일 발표 자료에 적힌 것은 협약 당사자의 역할 배분까지다.

A 로 가면 · 법령에 요건과 절차가 정해지면 어느 금융회사를 쓰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, 정상 거래가 잘못 차단된 경우의 이의 절차도 함께 정해진다.

B 로 가면 · 자율 조치로 남으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계좌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지금과 같이 쓰인다. 차단 기준도 회사마다 달라진다.

어디를 보면 아는가 ·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본다. 불법 도박 자금 이체에 관한 조문이 들어가는지, 교육 의무와 홍보에 관한 조항만 늘어나는지

### 함께 읽을 것

| 란    | 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금융제도 | 미성년자의 금융거래<br>계좌 지급정지 제도<br>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 보호<br>명의도용과 본인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상품 | 보통예금<br>체크카드<br>선불전자지급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사건 | 모르는 돈 1 원이 들어오면 계좌 전체가 멈춘다<br>40 만원을 받고 250 만원짜리 할부가 남는다<br>환율 0.1%를 맞히는 데 1 조 3,823 억원이 걸렸다 |

| 란     | 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피해 구제 | 돈을 잃었을 때 맨 처음 할 일<br>불법추심 대응<br>빚을 갚을 수 없을 때 |

## 근거와 검증

| 확인한 사실·숫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급  | 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육부·금융감독원·푸른나무재단·카카오뱅크 4자 업무협약 체결(2026.7.22)과 기관별 역할 — 금융감독원 청소년 금융피해 예방 정보·콘텐츠 제공, 푸른나무재단 교육자료·콘텐츠 개발, 카카오뱅크 불법 도박 의심계좌 이체 차단 등 기술적 예방 조치 지원 | 1 차 |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 2026.7.22 발표 원문 전제<br><a href="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4542">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4542</a>                      |
| 예술 체험형(연극) 도박예방교육 '제로라운드' 전국 170 개 중고교 확대, 참여 학생 도박 위험성 인식 25.1% 향상·대처 역량 42.8%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위 동일. 원문 수치<br><a href="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4542">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4542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으로 2026 년 5 월 12 일부터 학교장이 연 2 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시행할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교육부 2026.5.7 「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」 발표 원문 전제<br><a href="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0710">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0710</a>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감독원 2024.3.19 — 은행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이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·마약거래 유인에 악용, 대책은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·업무절차 정비,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,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금융감독원 2024.3.19 발표 원문 전제<br><a href="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49203">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49203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감독원 등 2024.8.12 발표 —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·치유 프로젝트, 향후 3 년간 약 100 억원 규모 사회공헌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금융감독원 2024.8.12 발표 원문 전제<br><a href="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55687">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55687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융감독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5.4.28 협력 발표, 불법도박 신고 1855-0112 · 도박문제 상담 13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금융감독원 2025.4.28 발표 원문 전제<br><a href="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66004">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66004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민법 제 5 조 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(제 1 항),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(제 2 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민법 제 5 조 조문 원문 확인<br><a href="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5222&amp;cseq=1708747">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5222&amp;cseq=1708747</a>   |
| 민법 제 6 조 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민법 제 6 조 조문 원문 확인<br><a href="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5222&amp;cseq=1708748">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5222&amp;cseq=1708748</a>   |
| 민법 제 17 조 — 제한능력이자 속임수로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며(제 1 항),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같다(제 2 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민법 제 17 조 조문 원문 확인<br><a href="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5222&amp;cseq=1708761">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5222&amp;cseq=1708761</a>  |
| 민법 제 141 조 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되, 제한능력은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민법 제 141 조 조문 원문 확인<br><a href="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5222&amp;cseq=1708901">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5222&amp;cseq=1708901</a> |

| 확인한 사실·숫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급  | 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3 항 — 접근매체의 양도·양수, 대가를 수수·요구·약속하며 하는 대여·보관·전달·유통,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하는 대여·보관·전달·유통, 질권설정 및 알선·중개·광고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조문 원문 확인<br><a href="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5549&amp;cseq=2310618">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5549&amp;cseq=2310618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의 3 —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·보관·전달·유통하는 행위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의 3 조문 원문 확인<br><a href="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5549&amp;cseq=2310620">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5549&amp;cseq=2310620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자금융거래법 제 49 조 제 4 항 — 제 6 조 제 3 항 및 제 6 조의 3 위반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전자금융거래법 제 49 조 조문 원문 확인. 영문 원문 "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"<br><a href="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5549&amp;cseq=2310678">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5549&amp;cseq=2310678</a>          |
|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 제 2 호 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·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 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되며, 재화·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 조문 원문 확인<br><a href="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63023&amp;cseq=1789175">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63023&amp;cseq=1789175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4 조 제 1 항 —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피해구제 신청·지급정지 요청,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정보 제공 등이 그 사유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4 조 조문 원문 확인<br><a href="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63023&amp;cseq=1789181">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63023&amp;cseq=1789181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민체육진흥법 제 26 조 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의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(유사행위)를 할 수 없다(제 1 항).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사행위 시스템 제작·유통, 정보 제공, 홍보·권유도 금지된다(제 2 항) | 1 차 | 국민체육진흥법 제 26 조 조문 원문 확인<br><a href="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68846&amp;cseq=2103306">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68846&amp;cseq=2103306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민체육진흥법 제 47 조 — 제 26 조 제 1 항 위반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국민체육진흥법 제 47 조 조문 원문 확인<br><a href="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68846&amp;cseq=2103338">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68846&amp;cseq=2103338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민체육진흥법 제 48 조 제 3 호 — 제 26 조 제 1 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차 | 국민체육진흥법 제 48 조 조문 원문 확인. 영문 원문 제 3 호 "A person who plays for money by committing an offense prohibited under Article 26 (1)"<br><a href="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68846&amp;cseq=2103339">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68846&amp;cseq=2103339</a> |
| 협약 당사자 4 곳 가운데 계좌 이체 차단을 맡은 금융회사는 1 곳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생  | 2026.7.22 발표 자료의 당사자 목록(교육부·금융감독원·푸른나무재단·카카오뱅크 4 곳) 과 역할 배분에서 이체 차단을 맡은 곳을 센 값이다. 원문에 그 숫자가 적혀 있지는 않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본문 분량   | 검증 항목 | 1 차 자료     | 추적 예정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2,512 자 | 19 건  | 18 건 (95%) | 6 개월 뒤 |

추적할 때 볼 것 · 불법 도박 자금의 이체를 중단시키는 요건과 절차가 법령 조문으로 정해졌는가.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. 제로라운드 확대 학교 수와 이체 차단에 참여한 금융회사 수가 어떻게 달라졌는가

정정 없음

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,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.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·매도·가입·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,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,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.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